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

확인번호	제2026-01-039호	확인연월일	2026.4.30.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대영바이오에너지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271-86-02579 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 54852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-6, 104호(여의동, 소상공인희망센터) 대표자 황 대 영		
대상 기술·서비스	(명칭) 식물성 잔재물 및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한 고발열량·저회분 바이오 생활연료제품 (주요내용) 기존에 버려지던 식물성 잔재물 및 농업부산물을 자원재활용 공정을 활용하여 기존 펠릿을 대체할 수 있는 고발열량 바이오 생활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기술		
유효기간	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※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		
확인 조건	(규제특례 대상 법령)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(폐기물처리업)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(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) (구역) - (펠릿 제작)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25-30 - (검증 장소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 (장상동535-4)(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배출가스 및 연소 안전성 및 환경성 검증) - (펠릿 연소) 전북 익산시 삼기면(주택용 펠릿보일러 설치 가구 5세대 내) (기간) 2년 (규모) 펠릿 1,000톤/연 생산 - (1차 년도) 펠릿 품질 검증 및 현장평가 등 - (2차 년도) 재활용 공정 검증 및 현장평가 등 (조건) 불임의 '부가조건' 준수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6년 6월 17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

<붙임>

부가조건

<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조건>

- ◇ 실증 기간동안 생활연료제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견과류 껍질의 종류와 배합 비율 등 제시할 것
- ◇ 비목재 펠릿(SPS-I KEAA 26-7234) 단체표준의 규격·기준과 비교·검토하여 이를 충족할 것
- ◇ 생활연료제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품질기준·규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비교·검토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기준·규격을 마련할 것

< 사후관리 협조 사항(공통 조건) >

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< 부가 조건 변경 관련(공통 사항) >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을 시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를 것